

「구미50+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7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보류

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

나. 제안이유

- 구미50+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중년층(45세~64세) 대상의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사무명 : 구미50+센터 운영

○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○ 위탁사무 : 구미50+센터 운영 전반

- 취업상담·연계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
- 취업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
- 근로 상담 및 지원, 그 외 고용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
- 신중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
- 사회공헌 사업 수행 등

○ 시설개요

구분	내용
시설명	구미 50+센터 ※ 現)구미청소년상담센터
위치 및 규모	구미중앙로 11길 13 , 417.75㎡, 지상 2층
시설구성	• 1층 : 사무실, 상담실, 로비, 대기실, 정보검색실 등 • 2층 : 교육실, 커뮤니티실 등

○ 위탁기간 : 2026. ~ 2028. (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간)

○ 전담인력 : 4명(센터장 1, 직원3)

○ 위탁조건

- 신중년 취업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
-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- 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○ 소요예산 : 300백만 원(시비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-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평가방법 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○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※ 2025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○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○ 부서의견 : 신중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

라. 주요내용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, 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50+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, 45세~64세 신중년층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, 조기퇴직·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재취업 환경의 제약과 안정적 소득 기반의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특히 디지털 전환·산업환경 변화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신중년층은 기존 경력을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상담, 고용연계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.
- 현 구미청소년상담센터 건물은 1981년부터 운영되어 온 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활용되어 온 만큼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원활한 공간 전환을 위해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, 신중년층 특성에 적합한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신중년층의 연령대가 4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므로, 사업의 성격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따라 일자리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 이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.
- 아울러 신중년층 대상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, 현재 편성된 사업비로 해당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재정적 타당성 분석도 병행되어야 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